2024. 4. 22.~4. 26.
체육사업소

2024년 종합감사 결과

【 체육사업소 】

기획예산담당관

- 목 차 -

Ⅰ. 감사개요 및 결과

Ⅱ. 지적사항 및 처분계획

· 행정상 처분
· 재정상 처분
· 신분상 처분

Ⅲ. 감사 처분요구서

Ⅰ. 감사개요 및 결과

감 사 개 요

○ 감사대상기관 : 체육사업소

○ 감 사 구 분 : 종합감사

○ 감 사 기 간 : 2024. 4. 22.~4. 26.(5일간)

○ 감사대상기간 : 2021. 4.~2024. 3.

○ 감 사 대 상 : 행정업무전반

· 군정 주요시책, 민원, 보조사업, 공사추진 실태

· 예산·회계, 세입·세출, 물품, 서무, 보안 등 업무처리 실태

감 사 결 과

□ 총 지적건수 : 14건

- 운영팀 9, 체육팀 3, 체육시설팀 2

○ 행정상 처분 : 14건(시정 4, 주의 10)

○ 재정상 처분 : 회수 2건 1,450천원

※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 등) 집행 및 부정청구 등 지적사항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없음

Ⅱ. 처분계획

행정상 처분

연 번	구 분	처 분	지 적 사 항
계	14건 (시정 4, 주의 10)		운영팀 9, 체육팀 3, 체육시설팀 2
1	운영팀 (9건)	주의	**회계관계공무원 부재중 대리 미지정** - 대리 미지정 지출(54건, 242천원)
2		주의	**신용카드 계좌 관리 소홀** - 내부결재 없이 5,002원 연체료 등 입출금
3		시정	**공공기록물 관리 소홀** - 기록물표지 미편철(13개 사업 27권)
4		주의	**초과근무 사후명령 부적정** - 최대 9일 지연결재(6건)
5		주의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미수립(6회)
6		주의	**공사 하자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 최종 하자검사 미실시 등(20건)
7		주의	**품질시험계획 미수립** - 배관공사 품질관리자 배치 계획 등 미수립(1건)
8		시정 회수 1,406천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 배관공사 목적 외 사용 확인 소홀(2건)
9		시정 회수 44천원	**환경관리비 정산 소홀** - 물탱크 교체공사 사용실적에 따라 미정산(1건)
10	체육팀 (3건)	주의	**민간위탁사무 처리상황 감사 미실시** - 관성정, 청산정 감사 미실시(6회)
11		주의	**보조금 확정 미통지** - 보조사업 심사 후 보조금 확정 미통지(5회)
12		시정	**특별휴가 복무처리 소홀**(체육시설팀 공통 지적사항) - 가족돌봄휴가 증빙자료 미첨부(2건)
13	체육시설팀 (2건)	주의	**사회보험료 미적용**(운영팀 공통 지적사항) - 천장 보수공사 건강, 연금 등 보험료 미계상(2건)
14		주의	**병가 복무처리 소홀** - 종합검진을 공가가 아닌 병가로 처리(1건)

재정상 처분

연 번	처 분	지 적 사 항	금 액 (천원)	비 고
계		2건	1,450	
1	회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1,406	
2	회수	환경관리비 정산 소홀	44	

Ⅲ. 감사 처분요구서

【 No 1 】 감사자 박준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4년 체육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4. .

옥천군 감사반장 김 연 철

〔기 관 명〕 체육사업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해당없음
〔 제 목 〕 회계관계공무원 부재중 회계관직 대리 미지정
〔 현 황 〕

(단위 : 천원)

연번	직	성명	구분	일자	일수	대리지정 여부	지출건수	지출금액	비고
계					4		54	242,812	
1	지출원	○○○	대체휴무	2023. 6. 13.	1	부	6	7,365	
2	지출원	○○○	연가	2022. 12. 26.	1	부	20	179,783	
3	지출원	○○○	출장	2022. 12. 15.	1	부	6	6,047	
4	지출원	○○○	출장	2022. 10. 25.	1	부	22	49,617	

【지적사항】

○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1항에 의하면,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

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하여야 하고,

○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에 의하면 제1관서인 체육사업소의 경우 재무관은 체육사업소장이며, 지출원은 지출업무담당(운영팀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3항에 의하면,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천군 지방공무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하여야 하고,

○ 「옥천군 지방공무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항(지정대리)에 의하면,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체육사업소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감사일 현재까지 지출원 ○○○ 등이 대체휴무 등으로 총 4일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대리 지정 없이 지출원 명의로 총 54건 242,812천원의 세출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체육사업소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2 】 감사자 황시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4년 체육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4. .

옥천군 감사반장 김 연 철

〔기 관 명〕 체육사업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해당없음

〔 제 목 〕 신용카드 계좌관리 소홀

〔 현 황 〕 계좌관리 소홀 현황

○ 328-01-00○○○(체육사업소 신용카드) (단위: 원)

연번	날짜	금액	내용	비고
1	2021.6.30.	2,990	내부결재없이 2,990원 현금 출금	
2	2022.3.6.	5,002	신용카드 연체료 5,002원 현금 입금	
3	2022.7.25.	7,900	- 22.7.25. 기간제 근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정산분 7,900원 현금 입금 - 22.7.26. 기간제 근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정산분 125,240원 현금 입금 → 22.7.26. 정산분 총액 133,140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출	
4	2022.7.26.	125,240		
5	2023.5.12.	312,750	- 5월 신용카드 대금(312,750) - 잔액부족으로 2,582원 연체 → 연체에 따른 이자 2원 23.5.30. 현금 입금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

용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으로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입력하여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또한,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회계절차를 위반하는 부당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5] 3.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한다. → 품의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체육사업소에서는 현황과 같이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지출처리 및 계좌관리를 소홀히 하여 지속적 연체료가 발생하고 확인불가한 현금이 출금되는 등 카드 사용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처 분 요 구]

체육사업소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3 】 감사자 박준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4년 체육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4. .

옥천군 감사반장 김 연 철

〔기 관 명〕 체육사업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해당없음

〔 제 목 〕 공공기록물 관리 소홀

〔 현 황 〕 공공기록물 법정 기록물철 표지 착오 사용 현황

(단위: 권)

연번	연도	공공기록물	수량	비고
계		13	27	
1	2021	○○○ 민간위탁 정산검사	1	보존기간 미표기
2	2021	군서국민체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신축공사	11	단위과제명, 보존기간, 시작년도-끝년도, 처리과 미표기
3	2023	신용(현금)카드 사용명세서	1	단위과제명 미표기
4	2023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	4	단위과제명 미표기
5	2023	제19회 성왕기 전국남녀 궁도대회 개최 지원	1	단위과제명 미표기
6	2023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지원	1	단위과제명 미표기
7	2023	제2회 옥천군수기차지 생활체육대회	2	단위과제명 미표기
8	2023	2023 읍면체육대회 개최 지원	1	단위과제명 미표기
9	2023	○○○ 족구장 조명설치공사	1	단위과제명, 보존기간 미표기
10	2023	○○○ 풋살장 음수대 설치공사	1	단위과제명, 보존기간 미표기
11	2023	○○○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	1	단위과제명, 보존기간 미표기

12	2023	○○○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	1	단위과제명, 보존기간 미표기
13	2023	○○○ 기능보강(차양) 공사	1	단위과제명, 보존기간 미표기

【지적사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공무원의 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고,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 「같은 법률」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아울러 「같은 법률 시행령」제24조(기록물의 정리), 「같은 법률 시행규칙」제8조(기록물철의 작성 및 등록정보의 관리), 「옥천군 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계획」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여부 · 접근권한 재분류, 분류 · 편철 확정 등을 하여야 하고,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철을 신규로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부터 별표 2(별첨)의 기록물철 표지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그 기록물철의 표지로 사용하여 편철 후 보존용표지를 씌우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별표 2(별첨)의 기록물철 표지 표기사항 : 단위과제, 기록물철 제목, 보존기간, 시작년도-끝년도, 처리과

- 그러나 체육사업소에서는 총 27권 기록물에 대하여 단위과제명, 보존기간 등 표기사항이 누락된 기록물철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체육사업소장은 해당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단위과제명, 보존기간 등 표기사항이 누락된 기록물철 표지에 대하여 보완 편철하여 주시고,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기록물철 표지

[시행규칙 별표 제2호서식]

단위과제
기록물철 제목
보존기간
시작년도-끝년도
처리과

※ 210㎜×297㎜ (보존용지 1,2종 70) : A4 세로 서식

【 No 4 】 감사자 박준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4년 체육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4. .

옥천군 감사반장 김 연 철

〔기 관 명〕 체육사업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해당없음

〔 제 목 〕 초과근무 사후명령 부적정

〔 현 황 〕

연번	초과근무자	초과근무일	결재일	당직근무자 확인 여부	결재 지연 일수
계		6건			4~9일
1	○○○	2022. 1. 30.	2022. 2. 3.	부	0
2	○○○	2022. 2. 2.	2022. 2. 3.	부	0
3	○○○	2023. 8. 5.	2023. 8. 11.	부	4
4	○○○	2023. 10. 19.	2023. 11. 7.	부	12
5	○○○	2023. 12. 9.	2023 .12. 16.	부	4
6	○○○	2024. 1. 6.	2024. 1. 20.	부	9

【지적사항】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Ⅵ. 초과근무수당 등, 8.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에 의하면,

-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 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체육사업소에서는 2022. 1.부터 2024. 1.까지 초과근무 사후명령 총 6건에 대하여 당직 근무자의 확인을 받지 않았으며, 초과근무 다음날로부터 최대 9일(4~9일) 지연하여 결재를 받은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체육사업소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5 】 감사자 박준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4년 체육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4. .

옥천군 감사반장 김 연 철

〔기 관 명〕 체육사업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해당없음

〔 제 목 〕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

〔 현 황 〕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수립 집행 현황

연번	업무추진비		집행액(천원)	연간 집행계획 수립여부	비고
총계			7,891	부 6	
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소계	0		
		2022년	0	예산없음	
		2023년	0	예산없음	
		2024년	0	예산없음	
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소계	1,440		
		2022년	720	부	
		2023년	720	부	
		2024년	0	부	
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소계	6,451		
		2022년	2,994	부	
		2023년	2,999	부	
		2024년	458	부	

【지적사항】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 「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4. 업무추진비)」에 의하면, 기관운영 · 정원가산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여야 함.

○ 그러나 체육사업소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 감사일 현재까지 정원가산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총 7,891천원을 집행함으로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체육사업소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6 】 감사자 임영빈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4년 체육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4. .

옥천군 감사반장 김 연 철

〔기 관 명〕 체육사업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해당없음

〔 제 목 〕 공사 하자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 현 황 〕

○ 정기하자검사 미실시 현황(20건)(첨부내역 별첨)

○ 최종하자검사 미실시 현황(20건)(첨부내역 별첨)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각종 공사가 완료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최종하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절(공사목적물의 하자)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 체육사업소에서는 공사 준공 완료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2022년 상·하반기 정기 하자검사(9건), 2023년 상·하반

기 정기 하자검사(11건) 시설공사 정기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 또한,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전까지 최종하자검사를 실시하지 하여야 함에도 2023년 최종하자검사(16건), 2024년 최종하자검사(4건)에 대하여 최종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체육사업소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7 】 감사자 임영빈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4년 체육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4. .

옥천군 감사반장 김 연 철

〔기 관 명〕 체육사업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해당없음

〔 제 목 〕 품질시험계획 미수립

〔 현 황 〕

(단위: 천원)

부서명	공사명	공사기간	대상공사 구분	총사업비 (자재대포함)	품질시험 계획 수립여부	품질관리자 배치여부	비고
체육 사업소	체육센터 흡수식 냉온수기, 온수보일러, 도시가스배관 설치공사	2022.12.6. ~ 2022.12.30.	초급품질 관리대상	299,802	부	부	전문 공사
	옥천체육센터 보수공사	2023.5.17. ~ 2023.8.29.	초급품질 관리대상	307,955	부	부	전문 공사

【지적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규정에 의하면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토목공사와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동법 시행령 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별표9에 의하면 품질시험계획에는 공사개요, 시험계획, 시험시설,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체육사업소에서는 체육센터 흡수식 냉온수기, 온수보일러, 도시가스배관 설치공사외 1건에 대하여 품질관리자 배치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체육사업소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8 】 감사자 임영빈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4년 체육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4. .

옥천군 감사반장 김 연 철

〔기 관 명〕 체육사업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406천원

〔 제 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 현 황 〕

(단위:천원)

사 업 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계약자	과다 집행액 (제경비포함)	비고
계	2개소	358,132		1,406	
체육센터 흡수식 냉온수기, 온수보일러, 도시가스배관 설치공사	2022.12.6. ~ 2022.12.30.	138,998	○○○	231	
옥천체육센터 보수공사	2023.5.17. ~ 2023.8.28.	219,134	○○○	1,175	

【지적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 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1]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 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 체육사업소에서는 체육센터 흡수식 냉온수기, 온수보일러, 도시가스배관 설치공사 외 1건를 추진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1,406천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체육사업소장은 해당 건에 대하여 회수 조치하여 주시고,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 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33%까지 적용함.

【 No 9 】 감사자 임영빈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4년 체육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4. .

옥천군 감사반장 김 연 철

〔기 관 명〕 체육사업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44천원

〔 제 목 〕 환경관리비 정산 소홀

〔 현 황 〕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금액 (도급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자	비고
옥천체육센터 물탱크 교체공사	10,732	2021.11.22	2021.11.24	2021.12.21	○○○	환경보전비 미정산 44천원

【지적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손, 오염의방지 등 건설공사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체육사업소에서는 옥천체육센터 물탱크 교체공사를 추진하면서 환경보전비

정산 처리를 소홀히 하여 제경비 포함 총 44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체육사업소장은 해당 건에 대하여 회수 조치하여 주시고,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10 】 감사자 박준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4년 체육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4. .

옥천군 감사반장 김 연 철

〔기 관 명〕 체육사업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해당없음

〔 제 목 〕 민간위탁사무 처리상황 감사 미실시

〔 현 황 〕 관성정, 청산정 민간위탁현황

연번	시설	목적	민간위탁 현황		민간위탁사무 처리상황 감사여부		비고
			대상자	기간			
1	관성정	관성정 운영 및 시설관리	옥천관성정 사두	2020.01.01. ~2024.12.31.	2021년	부	
					2022년	부	
					2023년	부	
2	청산정	청산정 운영 및 시설관리	옥천청산정 사두	2021.01.01. ~2025.12.31.	2021년	부	
					2022년	부	
					2023년	부	

【지적사항】

○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1조(처리상황의 감사)에 의하면,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그러나, 체육사업소에서는 매년 1회 이상 민간위탁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 실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감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체육사업소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11 】 감사자 박준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4년 체육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4. .

옥천군 감사반장 김 연 철

〔기 관 명〕 체육사업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해당없음

〔 제 목 〕 2023년 체육진흥분야 보조사업 보조금 확정 미통지

〔 현 황 〕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심사 확정 내역			보조사업 심사(정산검사) 여부	보조금 확정 통지 여부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5		320,000	320,000	0	여 5	**부 5**	
1	제16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초등학교 소프트테니스 대회	옥천군소프트테니스협회	60,000	60,000	0	여 (2023. 5. 9.)	부	
2	제5회 향수옥천 전국생활체육 탁구대회개최	옥천군탁구협회	30,000	30,000	0	여 (2023. 7. 20.)	부	
3	제59회 국무총리기 전국소프트테니스 대회 및 2023년 전국소프트테니스 종별선수권대회 개최	옥천군소프트테니스협회	60,000	60,000	0	여 (2023. 8. 3.)	부	
4	2023 옥천 한국실업 소프트테니스 춘계연맹전 개최	옥천군소프트테니스협회	40,000	40,000	0	여 (2023. 5. 9.)	부	
5	2023 옥천 향수배 동계스토브리그 전국중고배구대회 개최	한국중고배구연맹	130,000	130,000	0	여 (2023. 2. 22.)	부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①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 같은 법률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②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그러나 체육사업소에서는 제16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초등학교 소프트테니스 대회 외 4개의 보조사업 추진 후 2023. 2.~2023. 8. 해당 보조사업에 대하여 심사(정산검사) 후 보조금을 확정하였으나, 2024. 4. 감사일 현재까지 최대 1년2개월(8개월~1년2개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확정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체육사업소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12 】 감사자 박준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4년 체육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4. .

옥천군 감사반장 김 연 철

〔기 관 명〕 체육사업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특별휴가 복무처리 소홀
〔 현 황 〕 특별휴가(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내역

연번	직급	성명	특별휴가 기간	사유	비고
계		2건	1일 3시간		
1	○○○	○○○	2023. 10. 11. 09:00~18:00(1일)	학부모(초등학교) 대표 간담회 참석	증빙서류 미첨부
2	○○○	○○○	2022. 1. 3. 15:00~18:00(3시간)	자녀 병원 진료	증빙서류 미첨부

【지적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제9항,제10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에 의하면,

-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단, 개교기념일, 여름 및 겨울방학 등 정기적인 휴원·휴업일 제외),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

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등 이상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고,

- 자녀를 돌보기 위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단,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간 총 3일(24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그리고,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① 어린이집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②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③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하고,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부서장은 증빙서류, 교통상황, 왕복 소요시간, 소속 공무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자녀돌봄휴가 사용에 필요한 기간(시간)”을 승인하여야 함.

○ 그러나, 체육사업소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유급 가족돌봄휴가) 총 2건(1일 3시간)에 대하여 자녀 병원 진료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표준인사정보시스템 ‘차세대인사랑’ 등에 증빙서류 미첨부) 복무 처리하여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체육사업소장은 해당 건에 대하여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차세대인사랑’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고(증빙서류 첨부 불가 시 해당일 기준 연가보상비 단가에 따라 시간단위 회수 조치),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13 】 감사자 임영빈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4년 체육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4. .

옥천군 감사반장 김 연 철

〔기 관 명〕 체육사업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해당없음

〔 제 목 〕 사회보험료 미적용

〔 현 황 〕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금액 (도급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자	비고
옥천체육센터 천장 마이톤 등 보수공사	10,905	2022.2.15.	2022.2.16.	2022.3.15	○○○	
생활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 유지보수공사	13,010	2023.4.6.	2023.4.7.	2023.4.21.	○○○	

【지적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7항 및 동 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

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의하면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 보험료는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설공사는 적용하여야 함에도,

- 체육사업소는 옥천체육센터 천장 마이톤 등 보수공사 외 1건를 추진하면서 공사기간이 30일임에도 불구하고 건강 및 연금등 사회보험료를 공사 금액에 계상하지 않는 등 시설공사 원가계산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체육사업소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14 】 감사자 박준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4년 체육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4. .

옥천군 감사반장 김 연 철

〔기 관 명〕 체육사업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해당없음

〔 제 목 〕 병가 복무처리 소홀

〔 현 황 〕

소속	직급	성명	병가기간(일수)	병가사유	비고
체육사업소	○○○	○○○	2022. 9. 19. 09:00~18:00(1일)	종합검진	공가대상

【지적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병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및 「국민건강보험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함.

○ 그러나, 체육사업소에서는 2022. 9. 19. 김원태 주무관의 종합검진은 공가 처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병가로 처리함으로써 병가 복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체육사업소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